

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52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여 소송 종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④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- 2)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확보 및 판결금 지급 계획
[청소과-6357(2025. 3. 1.)호]

나. 개요

- 1) 사 건 명: 2021다264628, 2021다218021 임금
- 2) 원 고: 각 송을섭 외 7인, 김영수 외 4인(환경공무원)
- 3) 피 고: 영등포구, 구로구, 금천구, 양천구, 강서구
- 4) 청구취지: 피고는 원고에게 725,557,459원 및 지연이자 지급
- 5) 사건내용
 - 각종 조건이 부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 초과근로수당과 기수령 초과근로수당의 차액지급 청구
 - 과거 근로시간 총 11시간 중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, 1시간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청구

※ 통상임금의 범위

- (현행) 기본급+특수업무수당+작업장려수당+정액급식비
- (원고주장) 현행+상여금(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)

6) 원심 판결내용

- 2021다264628: 원고 일부 승소(2021. 7. 23.)
 - 피고는 원고에게 당심 인용금액 460,759,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1.1.부터 2021. 7. 23.까지 연 5%의 법정이자를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.
- 2021다218021: 원고 일부 승소(2021. 1. 26.)
 - 피고는 원고에게 당심 인용금액 264,798,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1.1.부터 2021. 1. 26.까지 연 5%의 법정이자를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.
-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7) 대법원 판결내용: 원고 승소(2025. 2. 20.)

-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다. 지출내역

- 1) 예비비 확보액: 금1,229,288,873원
- 2) 지출금액: 금1,229,288,873원
- 3) 산출내역

(단위: 원)

건 명	원 금	판결금의 이자 5%	판결금의 이자 12%	합 계
2021다 264628	460,759,211	105,027,849 (2017.01.01.~2021.07.23.)	200,714,283 (2021.07.24.~2025.03.10.)	766,501,343
2021다 218021	264,798,248	67,142,676 (2016.01.01.~2021.01.26.)	130,846,606 (2021.01.27.~2025.03.10.)	462,787,530

라. 예비비 사용 이유

2021다264628 및 2021다218021 임금소송 패소 확정판결(2025. 2. 20.)을 수용하여 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획예산과 배상금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[예산과목: 청소과, 행정운영경비(청소과)(기타/기타), 인력운영비(청소과), 환경공무원 인력운영, 배상금 등(305), 배상금 등(01)]를 확보하여 지급함

3. 추진경과

- 2025. 3. 1.: 예비비 확보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(청소과)
- 2025. 3. 10.: 예비비 배정 통보(기획예산과→청소과)
- 2025. 3. 10.: 배상금 지급처리(청소과→재무과)